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730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7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2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7. 25.

(3) 회 부 일 : 2025. 7. 2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 단축에 용이하고, 약국에서 조제를 위해 처방정보를 입력 시 시간 단축뿐 아니라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자적으로 처방내역 또는 처방전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과 전국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을 잇는 전달시스템 미비로 전자처방전 활용이 미비함. 또한,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처방전 발송 업무 지원을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안 제18조의3 신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8조의3제2항),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준수사항(안 제18조의3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안 제18조의3제4항), 정보의 누출·변조·훼손 금지(안 제18조의3제6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누구든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변조·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안 제87조의2제2항제2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2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제17조의2(처방전) ① ----- ----- ----- -----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③ (생략)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신설>

-----한정하며, 제18조
의3에 따른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환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본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

-----전자처방전에 한정하며, 제18조
의3에 따른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환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본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자처방전
발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
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2.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제87조의2(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의2. (생략)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 5. (생략)

제9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

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87조의2(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1의2. (현행과 같음)

2. -----
----제18조의3제6항, 제21조의2제5항-----

-----.

3. ~ 5. (현행과 같음)

제9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 4. (생 략) ③ · ④ (생 략)	-----. 1. 제1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u>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u> <u>자료를 제출한 자</u>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약사법」 제23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의약품의 조제는 약사 및 한약사가 면허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예외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음.¹⁾

이와 같은 「약사법」 규정에 따라 현행 「의료법」 제18조²⁾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①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1. ~ 14. (생 략)

2)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전자처방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식 외에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전자처방전의 발송 수단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별도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전자처방전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19가 장기간 확산됨에 따라 2020년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하에서 한시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면서 본격화되었음.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업체를 중심으로 민간영역에서 전자처방전의 약국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민간 업체의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에 대하여 환자의 민감정보 유출, 처방전의 일부 약국 편중 현상 심화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었고, 약사단체를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공익적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³⁾

이에 정부는 2022년 3월부터 의약단체·환자단체·전문가·관련 기관 및 업체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를 구성하여 4차례의 회의를 통해 전자처방전의 표준화 및 전달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2022년 6월 이후 회의가 중단되었음.

이후 2023년 8월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123906, 서영석의원

3) 대한약사회 보도자료, “정부 주도의 공익적 전자처방전 도입 촉구”, 2020.11.11.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2023년 11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었으나, 의결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전자처방전을 안전하게 전송하여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정부가 직접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단체의 찬반 양론이 각각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에 찬성하는 측⁴⁾에서는 동 시스템이 종이처방전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와 처방전 입력오류 문제를 해소하고,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처방전을 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며, 의료 및 약국 현장의 데이터 호환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임.⁵⁾

-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는 측⁶⁾에서는 전자처방전은 환자의 처방내역 확인 및 조제약과의 대조 기회를 박탈하고 조제오류 노출 가능성을 높이며,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에서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 및 의료현장의 실효성 부족

4) 대한약사회 의견 참조.

5)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7월부터 자체적인 “공적처방전달시스템(<http://www.pfds.or.kr>)”을 구축,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연동하여 운영 중임.

- 다만, 실제 조제건수가 저조하여 효용성 논란이 있음(2025.2.21. 데일리팜, ‘효용 논란’ PPDS, 1만2천건 중 실제 조제건수는 1900건?).

6)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의견 참조.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민감한 환자 정보의 중앙집중으로 보안 및 시스템 문제가 우려되고,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재정 투입은 비효율적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편, 개정안은 제18조의3에서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규정⁷⁾을 입법모델로 하여 유사한 조문체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①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②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7)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 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2.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3.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그러나, 현행법은 제21조의2제5항에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87조의2제2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 받은 공공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조항이 없음.

- 개정안에서는 안 제18조의3제6항에서 ‘누구든지 전자처방전전달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이 방화벽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 활용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⁸⁾

□ 참고로,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주 지역에 한하여 QR코드 기반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참고자료),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의 내역 사업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신규로 반영하고, 동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한 BPR/ISP 연구용역비 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음.

8)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관련 조항에서도 시스템 운영 전문기관에 대한 벌칙 외에 안 제18조의3제6항과 동일한 형식의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음(「의료법」 제21조의2제8항 및 제87조의2제2항제2호).

< 전자처방전 전송 서비스 흐름도(안) >



자료: 보건복지부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수정 수용)

□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처방전 발행·보관 비용 절감, 환자 편의성 제고 및 건강정보 보호, 비대면진료 지원 등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함.

□ 다만, 시스템 설계 및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8. 1. 1.부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기록원 (보완)

- 공공기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관리되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에 해당하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관리 대상임. 따라서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법」을 따르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3) 대한의사협회 (반대)

- 개정안은 전자처방전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처방전을 발송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자가 처방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조제약과 대조할 기회를 박탈함에 따라 조제오류 등 약화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임.
-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QR코드 기반 전자처방전 시스템 시범사업 당시,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상 어려움, 의료기관 및 약국의 별도 프로그램 설치 필요, 전자처방전 출력 및 보관 등 불필요한 절차로 실효성이 낮았으며, QR 코드 방식이 아닐 경우 방문 환자의 본인 확인, 환자에게 전자처방전 정보 제공 등의 절차로 인해 기존 방식보다 불편할 수 있음.
-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를 정부 주도 시스템에 집적하는 것은 해킹 등 시스템 보안사고 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요구권은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정보의 정부 수집 및 제3자 제공의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민간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팩스나 컴퓨터 통신 등 기존 방식으로든 전자처방전 전달이 가능한바, 공적 주도 시스템에 대한 의료현장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임.

4) 대한치과의사협회 (반대)

-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보장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공공기관에서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공공데이터 형식으로 공개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가 감독권을 갖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동의하에 이용하고, 그 이용내역을 환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음.
- 환자 또는 의료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처방전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한 정보는 자동 삭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대한병원협회 (반대)

-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중앙집중을 통한 정보 집적화로 인하여 민감한 의료데이터의 대량 유출 등 정보보안 문제, 전국적인 시스템 장애발생 등 단일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또한, 약사 재량의 대체조제가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성분명 처방으로 확대되어 최적의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의사의 처방권이 침해되고, 대체조제 등으로 인한 약화 사고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짐.
- 따라서 민간분야 정보기술 발전 속도와 반영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계 단체 및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인증 등 민간 참여 가능성(표준형 모델 제시 후 인증 방식) 검토가 필요함.

6) 대한약사회 (찬성)

-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연간 약 5억 장의 종이 처방전 발급 및 3년간의 보관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로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비대면 진료 확산에 따라 전자처방전 활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기술적 기반은 미비한바, 전자처방전을 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처방 정보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진료-조제-복약지도의 연계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장하며,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짐.
- IT기술 발전과 보편화로 의료 및 약국 현장은 다양한 부분에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디지털 정보 처리 방식을 별도 규정 없이 민간영역에 방임하여 데이터 호환성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인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보건의료 데이터 환경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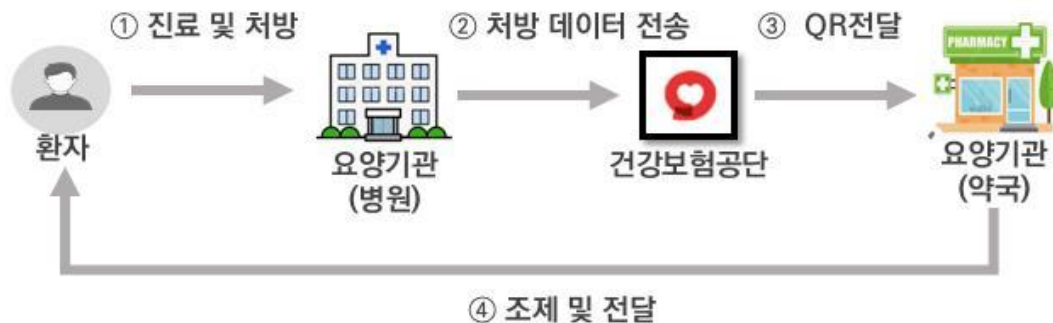
7)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찬성)

- ☐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통해 처방정보가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4

□ 사업개요

- 진료지원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연세의료원과 협력하여 전자처방전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검증차원의 시범사업으로 진행
 - (사업기간) '22.9. ~ '23.12.
 - (참여현황) 의료기관(원주연세의료원) 1개소, 약국(문전약국) 1개소 참여
 - (이용실적) 실증용 처방전 26건 발행 ... ('22년) 22건, ('23년) 4건
 - (추진모델) 요양기관 ↔ 환자 ↔ 약국 간 전자처방전(QR) 전달·중계



□ 사업운영 제한사유

- **(환자)** 앱 설치, 본인 인증, 전자결제 등의 절차로 이용 까다로움
- **(의료기관)** 참여약국이 1개 기관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이 제한되어 이용을 독려하기 어렵고, 이용절차에 대한 안내시간도 부담
- **(약국)** 시범사업용 전자처방전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조제실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불편하며, 전자처방전 보존에 대한 법령이 없어, 별도로 종이 처방전을 출력해서 보관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함
- **(공단)** 의협·약사회 등 이해관계자간 의견이 달라 참여 독려가 어려웠고, 참여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요구하여 사업 확대 난항

□ 장애요인 극복방안

- 관련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추진
- 특정지역 선정, 체계적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최적합 모델 마련